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예원예술대학교)의 2024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5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예원예술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 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예원예술대학교)의 2025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2025년 05월 02일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

감사 최 창 용

감사 강 상 우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행정지원처장

성명 차 종 삼

[별지 제2호 서식]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4회계연도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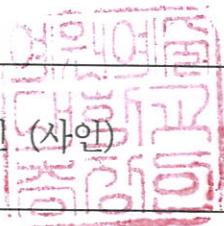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1. 법인 수익용재산 매출 감소에 따른 방안 마련	1. 법인 수익용재산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 모색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이사장 차종선 직인 (서인)

[별지 제3호 서식]

예원예술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4회계연도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1. 장기부채에 대한 해결 방안 필요	1. 예원예술대학교 장기부채 처리방안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 수립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용자 대여, 일반 시중 은행 대여 등 검토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볼임)	

피감사기관장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고 광 모

직인 (사인)